

## 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 : 유진챔피언티액티브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
나. 변경시행일 : 2024년 8월 23일(금)

다. 변경 대상 서류 : 신탁계약서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라. 주요 변경 내용 :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
### [신탁계약서]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b></p> <p>① ~ 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&lt;생략&gt;</p> <p>3. <u>유진챔피언K메가트렌드따라잡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	<p><b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b></p> <p>① ~ ③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투자기구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3. <u>유진코리아스마트리더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&lt;생략&gt;</p> <p>3. <u>유진챔피언K메가트렌드따라잡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(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 2. 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3. <u>유진코리아스마트리더증권모투자신탁(주식)</u></p> <p>② &lt;현행과 같음&gt;</p>

### [(간이)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 연혁 신설	<신설>	모투자신탁 명칭 변경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챔피언K메가트렌드따라잡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코리아스마트리더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챔피언K메가트렌드따라잡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코리아스마트리더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모투자신탁 명칭 변경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챔피언K메가트렌드따라잡기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모투자신탁 수익증권 - 유진코리아스마트리더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
<끝>.